

www.yuhak2min.com

KOREA EMIGRATION & INVESTMENT FAIR 2012



제23회 춘계

해외 이민 · 투자 박람회



부산행사 2012년 4월 5일(목) **BEXCO**

서울행사 2012년 4월 7일(토)~4월 8일(일) **coex**

Korea Emigration & Investment Fair 2012/Spring



세미나



• 모시는 글

전세계 경기침체 및 악화의 반복에 따른 긴장감 속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제 2의 인생 설계 및 자녀교육을 위한 이민, 투자이민, 사업이민에의 욕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올바른 해외 이민 및 투자를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제 23회 해외 이민·투자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본 전시회는 2000년 처음 개최되어 매회 2만 여 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그 명성을 꾸준히 이어 2012년 봄, 23회 전시회를 맞이합니다. 이민·투자, 취업, 창업, 은퇴 및 해외 부동산 등 국가별 정보와 교육, 주거, 투자환경 등 현지 정착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본 전시회에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전시회 개요

- ◎ 명 칭 : 제 23회 춘계 해외 이민·투자 박람회
- ◎ 기 간 : 부산 - 2012. 4. 5(목) 오전 11시~오후 6시
서울 - 2012. 4. 7(토)~4. 8(일) 오전 11시~오후 6시
- ◎ 장 소 : 서울 - 코엑스 D홀(3F) / 부산 - 벡스코 3홀(1F)
- ◎ 주 회 : 한국전람(주)

• 세미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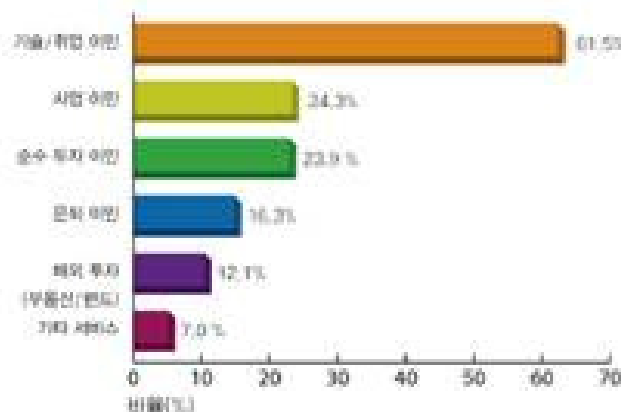
각 업체의 이민 프로그램 및 투자, 법률컨설팅 등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위해 전시 기간 중 개최합니다. (단, 전시 참가업체에 한함)

일시	서울 - 2012. 4. 7(토)~4. 8(일)
장소	서울 - 전시장 내 세미나실
내용	해외 이민 및 투자컨설팅, 법률컨설팅, 이주관련회사 소개 등
참가비	시간당(50분 기준) 550,000원(VAT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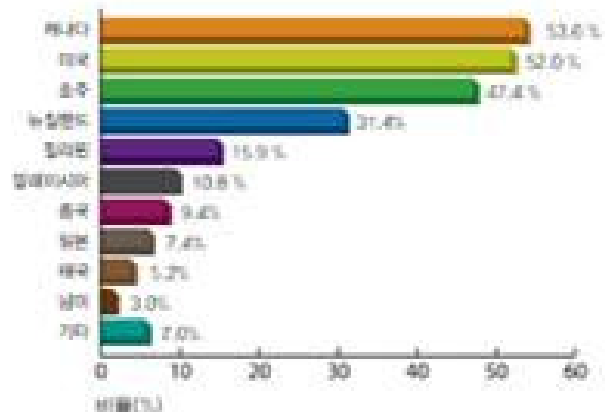
※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주최측에 신청 바라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관람객 관심분야



관람객 관심국가



제23회 춘계 해외 이민 · 투자 박람회

K O R E A
EMIGRATION
& INVESTMENT
FAIR
2012

참가 신청 및 문의



한국전람(주)

한국전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710호

Tel: (02)783-8261 Fax: (02)784-6810

www.yuhak2min.com

E-mail: fairs@ktfairs.com

전시주최자 소개

한국전람(주)는 1988년 창립 이래 국내에서 산업무역 전시회의 주최,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서울 코엑스(COEX)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해외 유학 · 어학연수 박람회, 해외 이민 · 투자 박람회, 조기유학 및 영어학습 박람회, 국제 유리 · 상호 산업전을 주최하고,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국제 파스너&와이어 산업전, 국제 주조 · 단조 · 공업로 및 열처리 산업전, 국제 케이블 및 튜브 · 파이프 산업전, 국제 다이캐스팅 산업전, 국제 자동차부품 및 금형가공 산업전 등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로는 중국 대련의 SHIPTEC CHINA, 러시아 NEVA 등의 한국관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 국 : 제 11 - 30 호
수 신 : 참가업체 제위
참 조 : 전시담당자/홍보부/영업부

2011. 11.

제 목 : **제 23 회 해외 이민·투자 박람회 참가안내**
(KOREA EMIGRATION & INVESTMENT FAIR 2012/Spring)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각 국의 이민법 개정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점차적인 경기회복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이민, 사업이민, 교육이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올바른 투자 및 이민 정보 제공을 통해 바람직한 이주 및 해외 투자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 이민·투자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 래

< 부산행사 > 일시 : 2012 년 4 월 5 일(목)
장소 : 백스코(BEXCO)
< 서울행사 > 일시 : 2012 년 4 월 7 일(토) - 4 월 8 일(일)
장소 : 코엑스(COEX)

3. 본 전시회는 이민 및 투자에 관한 국내 최대의 전시회로서 2011 년 추계 전시회에는 약 15,000 명의 해외 투자 및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여 진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4. 본 전시회가 귀사의 우수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사료 되오니 관련 업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전시회 안내서 1 부
참가신청서 1 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한 국 전 략 (주)
대표이사 이 홍 규
[직 인 생 략]

전시회 참가약정

제1조(용어의 정의)

1. "전시자" 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 신청자를 말한다.
2. "전시회" 라 함은 본 신청/계약서 상에 명시된 전시회를 말한다.
3. "주최자" 라 함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소재 한국전람(주)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스탠드(STAND)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시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90일전 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지정된 시점 이후 잔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해약)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내에 지정 기간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품 및 장치물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자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약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본 참가약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